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24.

의안 번호	680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12. 강남구청장(생활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4.)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구립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설치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학교복합 체육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립 체육시설 예약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추가(안 [별표2])

○ 학교복합 체육시설 명칭 추가(안 [별표3])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6. ~ 2026.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구립 체육시설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설치한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강남구가 운영하기로 한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검토

□ **구립 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강화(안 제4조제5항)**

○ 안 제4조제5항에서는 구립 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미흡을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하고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서울시에서

도 20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안내한 바 있음

○ 강남구는 2022년 8월 1일부터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https://life.gangnam.go.kr)에서 예약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본 개정 사항은 권익위 권고 사항과 예약 제도 운영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권익위 및 서울시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덧붙여 예약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시설 사용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근거 마련(안 별표 2)**

○ 안 별표 2의 개정 사항은 신규 설치한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한 대관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립 체육시설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현황]

구 분	설치일	시범운영일	시설 현황	운영현황
강남스포츠문화센터	2025. 9.	2025. 11. ~	1타석	09:00 ~ 18:00(평일)
일원스포츠문화센터	2025. 9.	2025. 11. ~	1타석	09:00 ~ 18:00(평일)

○ 위 체육시설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관내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 유휴공간 5개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라 설치된 것임.

○ 참고로 2025. 11.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복합문화센터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본 개정안에 따른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관료 책정 기준 설명이 필요해 보임.

[체육시설 및 동복합문화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비교]

<table>
<tr><td>동복합문화
센터 조례</td><td>
<table>
<tr><td>이용료</td><td>파크골프장</td><td>1회 이용권 강남구민 1인 3,000원, 타구민 1인 6,000원(레슨 제외)</td></tr>
</table>
</td></tr>
<tr><td>금번
개정안</td><td>
<table>
<tr><td>대관료</td><td>스크린
파크골프장</td><td>○ 스크린 파크골프장(2시간) : 16,000원</td></tr>
<tr><td colspan="3">비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관료는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함</td></tr>
</table>
</td></tr>
</table>

○ 본 개정안에 따라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최대 8명이 이용할 경우 1인당 부담액이 2,000원 수준으로 동복합문화센터 이용료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 목적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 관련(안 별표 3 및 별표 4)**

○ 안 별표 3 및 별표 4는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별표 3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중 강남구가 운영하기로 한 영희초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것이고, 안 별표 4는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한편, 안 별표 4에서는 골프(영희초 골프 시설 13타석)의 경우 횟수별 이용료를 정하였는데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횟수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수강료 규정과 비교해 보면 수강료의 경우 비고란에 월 단위 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골프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타 종목과 달리 골프는 1회 이용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물론 안 별표 4 비고에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별표 2의 이용료 기준(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불

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과거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호가 붙은 조의 체계를 정비하고(안 제8조),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임(안 제20조).

□ 이상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 수정 여부 및 수정 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table>
<tr><th>개 정 안</th><th>수 정 의 견</th></tr>
<tr><td>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 3과 같다.</td><td>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별표 3과 같다.</td></tr>
<tr><td>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 략)</td><td>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td></tr>
<tr><td>[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h>비 고</th></tr><tr><td>이용료</td><td>골프</td><td>30,000</td><td>60,000</td><td>80,000</td><td>100,000</td><td>110,000</td><td>120,000</td><td></td></tr></table></td><td>[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h>비 고</th></tr><tr><td>이용료</td><td>골프</td><td>30,000</td><td>60,000</td><td>80,000</td><td>100,000</td><td>110,000</td><td>120,000</td><td>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골프장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함</td></tr></table></td></tr>
</table>

Ⅲ.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약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설치되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 됨.

다만, 예약현황 공개 근거 마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2019년 10월에 있었고 서울시에서 2023년 5월 권고 사항 이행을 안내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된 금번 입법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집행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있어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680호

제안일자 : 2026.2.24.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명칭을 사용 용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인용되는 조항 및 숫자의 표기를 변경 (안 제3조, 안 제8조)

○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별표 1, 3”을 “별표 1・별표 3”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안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 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 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 스	-	-	42,000	-	-	63,000	
이 용 료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 영 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 구 장	○ 1시간 : 3,500원						
		헬 스 장	○ 1회 : 5,600원						
비 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 3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별표 3-----.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③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골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탁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스	-	-	42,000	-	-	63,000	
이용료	수영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탁구장		○ 1시간 : 3,500원						
	헬스장		○ 1회 : 5,600원						
비고			○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스	-	-	42,000	-	-	63,000	
이용료	골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영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구장		○ 1시간 : 3,500원						
	헬스장		○ 1회 : 5,600원						
비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수 정 안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스	-	-	42,000	-	-	63,000	
이용료	골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영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구장		○ 1시간 : 3,500원						
	헬스장		○ 1회 : 5,600원						
비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문화·취미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 ~ 40,000	50,000 ~ 80,000	75,000 ~ 120,000	-	-	-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암벽등반	-	90,000	120,000	-	-	-	
		라켓볼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110,000	
		테 니 스	○ 월 수강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수강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 체육활동(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풋 살 장	○ 풋살(야간) : 20,000원(25,000원) ○ 풋살외(야간) : 35,000원(40,000원)						
		3:3 농구장	○ 농구 : 30,000원 ○ 농구외 : 45,000원						
		라켓볼장	○ 라켓볼장(1면) : 30,000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 스크린 파크골프장(2시간) : 16,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7,000원, 주말 야간 20,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 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3,000원, 주말、공휴일 : 4,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라켓볼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6,000원, 주말、공휴일 7,000원 ○ 월 자유이용(1회 1시간, 주3회) : 60,000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파크골프장	○ 1회(2시간) : 4,000원(1인)	
비 고	○수강료는 헬스, 탁구(2시간), 배드민턴(2시간), 암벽등반(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1회 대관 시 체육관、풋살장은 1시간, 축구장은 2시간,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3:3 농구장은 1시간, 인원 6명, 라켓볼장은 2시간,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할 수 있음 - 기준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 - 주말、공휴일 : 30퍼센트 할증 - 오전 9시 이전 :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관료는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함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축구장, 풋살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영희종합스포츠센터	일원로 21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공간 등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 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 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 스	-	-	42,000	-	-	63,000	
이 용 료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 영 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 구 장	○ 1시간 : 3,500원						
		헬 스 장	○ 1회 : 5,600원						
비 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별표 3----------.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 <신 설>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삭 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80

제출연월일 : 2026. 2. 1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생활체육과

1. 제안이유

구립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설치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학교복합 체육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 체육시설 예약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나.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추가(안 [별표2])

다. 학교복합 체육시설 명칭 추가[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6. ~ 2026.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3”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문화·취미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40,000	50,000~80,000	75,000~120,000	-	-	-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암벽등반	-	90,000	120,000	-	-	-	
		라켓볼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110,000	
		테 니 스	○ 월 수강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수강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 체육활동(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풋 살 장	○ 풋살(야간) : 20,000원(25,000원) ○ 풋살외(야간) : 35,000원(40,000원)						
		3:3 농구장	○ 농구 : 30,000원 ○ 농구외 : 45,000원						
		라켓볼장	○ 라켓볼장(1면) : 30,000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 스크린 파크골프장(2시간) : 16,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7,000원, 주말 야간 20,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 1회(1시간) : 30,000원						

	교 실		
	암벽등반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3,000원, 주말・공휴일 : 4,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라켓볼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6,000원, 주말・공휴일 7,000원 ○ 월 자유이용(1회 1시간, 주3회) : 60,000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파크골프장	○ 1회(2시간) : 4,000원(1인)	
비 고	○수강료는 헬스, 탁구(2시간), 배드민턴(2시간), 암벽등반(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1회 대관 시 체육관・풋살장은 1시간, 축구장은 2시간,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3:3 농구장은 1시간, 인원 6명, 라켓볼장은 2시간,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할 수 있음 - 기준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 - 주말・공휴일 : 30퍼센트 할증 - 오전 9시 이전 :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관료는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함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축구장, 풋살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영희종합스포츠센터	일원로 21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공간 등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 86,000	107,500 ~ 172,000	161,250 ~ 258,000	-	-	-	
	체육교실	수 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 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 스	-	-	42,000	-	-	63,000	
이 용 료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 영 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 구 장	○ 1시간 : 3,500원						
		헬 스 장	○ 1회 : 5,600원						
비 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 3----------.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 <신 설>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삭제 2012.4.6> 1. ~ 3. 삭 제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수강료	문화·취미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40,000	50,000~80,000	75,000~120,000	-	-	-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암벽등반	-	90,000	120,000	-	-	-	
		라 켓 볼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110,000	
		테 니 스	○ 월 수강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수강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 체육활동(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풋 살 장	○ 풋살(야간) : 20,000원(25,000원) ○ 풋살외(야간) : 35,000원(40,000원)						
		3:3 농구장	○ 농구 : 30,000원 ○ 농구외 : 45,000원						
		라켓볼장	○ 라켓볼장(1면) : 30,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7,000원, 주말 야간 20,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 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3,000원, 주말·공휴일 : 4,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라켓볼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6,000원, 주말·공휴일 7,000원 ○ 월 자유이용(1회 1시간, 주3회) : 60,000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파크골프장	○ 1회(2시간) : 4,000원(1인)						
비 고			○수강료는 헬스, 탁구(2시간), 배드민턴(2시간), 암벽등반(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1회 대관 시 체육관·풋살장은 1시간, 축구장은 2시간,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3:3 농구장은 1시간, 인원 6명, 라켓볼장은 2시간,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할 수 있음 - 기준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 - 주말·공휴일 : 30퍼센트 할증 - 오전 9시 이전 :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축구장, 풋살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개 정 안

[별표 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수강료	문화·취미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 원)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40,000	50,000~80,000	75,000~120,000	-	-	-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암벽등반	-	90,000	120,000	-	-	-	
		라 켓 볼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110,000	
		테 니 스	○ 월 수강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수강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 체육활동(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풋 살 장	○ 풋살(야간) : 20,000원(25,000원) ○ 풋살외(야간) : 35,000원(40,000원)						
		3:3 농구장	○ 농구 : 30,000원 ○ 농구외 : 45,000원						
		라켓볼장	○ 라켓볼장(1면) : 30,000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 스크린 파크골프장(2시간) : 16,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평일 12,000원, 주말 1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7,000원, 주말 야간 20,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 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3,000원, 주말·공휴일 : 4,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라켓볼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6,000원, 주말·공휴일 7,000원 ○ 월 자유이용(1회 1시간, 주3회) : 60,000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파크골프장	○ 1회(2시간) : 4,000원(1인)						
비 고			○수강료는 헬스, 탁구(2시간), 배드민턴(2시간), 암벽등반(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1회 대관 시 체육관·풋살장은 1시간, 축구장은 2시간,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3:3 농구장은 1시간, 인원 6명, 라켓볼장은 2시간,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부과할 수 있음 - 기준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원 추가 - 주말·공휴일 : 30퍼센트 할증 - 오전 9시 이전 :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관료는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함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축구장, 풋살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문화·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86,000	107,500 172,000	161,250 258,000	-	-	-	
	체육교실	수 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탁 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 스	-	-	42,000	-	-	63,000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탁 구 장	○ 1시간 : 3,500원						
		헬 스 장	○ 1회 : 5,600원						
비 고			○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영희종합스포츠센터	일원로 21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공간 등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 고
수강료	취미교실	일반강좌	25,800	51,600	77,400	90,300	107,500	129,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단위:원)
		특화강좌	43,000	86,000	129,000	172,000	215,000	-	
		정예강좌 (할인불가)	53,750 86,000	107,500 172,000	161,250 258,000	-	-	-	
	체육교실	수 영	37,500	54,000	75,000	96,000	117,000	138,000	
		탁 구	23,400	41,400	59,400	75,600	88,200	99,000	
		헬 스	-	-	42,000	-	-	63,000	
이용료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스크린 골프장	○ 1시간 : 10,000원						
		수 영 장	○ 자유수영(1회) : 성인 6,500원, 청소년 5,200원						
		탁 구 장	○ 1시간 : 3,500원						
		헬 스 장	○ 1회 : 5,600원						
비 고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관련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생활체육과 행정7급 이다현(02-3423-6362)